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전력전자학회(이하 '학회'라 함)가 주최하는 학술행사(학술대회, IE 경진대회, 세미나 등)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학술행사의 프로그램 기획, 준비 및 실행 등 행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학술위원장(이하 위원장) 1명, 학술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 약간 명, 학술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학술이사로 보하고 학술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안건은 위임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